

産業調査方法論

—韓國에의適用問題を中心으로—

經濟企劃院

序 文

本書는 1963년 産業센사스의 効果的인 實施와 成功的 完遂를 期하는데 一助가 되고져 하는 努力으로서 調査員과 指導員의 訓練用 教材로 만들어진 것으로 主로 “United Nations, Studies in Methods : Industrial Censuses and Related Enquiries, Vol. I, Series F, No. 4 New York, 1953”를 參考로 하여 우리나라의 實情을 考慮하면서 執筆된 것입니다.

訓練이 訓練만으로 그쳐서는 意味가 없을 것입니다. 訓練이 끝난 後에도 여러분은 恒常 産業調査에 對한 理解를 增進토록 努力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여러분의 이 分野에 關한 智識을 補돋아 주는 參考書가 있어야 할것인데 本書가 그 役割을 맡게 될것입니다. 勿論 訓練期間이 아주 짧고 直接的으로 實査에 必要한 것에 關하여는 調査要領이나 調査員名銘心書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 되겠지만 本書는 根本的인 面에서 여러분의 産業調査에 關한 知識을 한層 넓혀 줄것입니다.

産業調査의 重要性에 關하여는 구태여 說明하지 않더라도 本書를 읽어가는 동안에 自然스럽게 認識하게 될것입니다. 많은 人員과 莫大한 豫算을 들여서 모처럼 實施하는 本調査가 成功될때 그 結果는 國家의 여러가지 經濟政策을 樹立하고 施行하는데 必要한 支柱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 우리는 다같이 우리의 熱과 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勿論 本書에도 여러가지 未備點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研究하고 檢討해 보는 뜻에서도 자주 읽어 보시기를 付託 드리면서 序文에 代하고져 합니다.

1962年 6月

第一卷

目 次

第一章 序 論	
第一節 概 觀	5
第二節 産業調査의 方式	6
가. 英美式調査	6
나. 大陸式調査	7
第三節 産業調査의 種類	9
가. 稀有調査	9
나. 經常調査	9
第四節 産業調査의 範圍	10
第五節 産業調査의 對象	11
가. 事業體	11
나. 企業體	12
第六節 産業調査의 沿革	12
가. 英美式調査	12
(1) 1800-1899	12
(2) 1900-1939	14
(3) 1940 以後	17
나. 大陸式調査	19
(1) 1800-1899	19
(2) 1900-1939	21
(3) 1940以後	22
다. 其 他	23

(1) 1940 以前	23
(2) 1940 以後	23
第七節 우리나라의 産業調査	24
第二章 調査項目論	31
第一節 事業體數	31
第二節 雇傭, 人時 및 人件費	32
가. 資料의 必要性	32
(1) 雇傭度와 人件費	32
(2) 從業員의 現況	33
(3) 社會的 經濟的 目的	34
나. 雇 傭	34
(1) 總雇傭	34
(2) 從事者	36
다. 人 時	39
라. 人件費	40
第三節 動力施設, 機械 및 其他施設	41
가. 動力施設	42
(1) 型態別 動力施設의 容力	43
(2) 總容力 算出에 必要한 分類	44
(3) 動力施設의 其他 分類	44
나. 機械 및 其他施設	45
第四節 投 資	46
가. 資料의 必要性	46
(1) 富와 財政構造의 測定	46
(2) 投資支出의 測定	47
나. 財政構造	48
다. 有形固定資産의 總額	48

다. 有形固定資産의 支出額	49
마. 在庫額	50
(1) 報告期間	50
(2) 型態別 在庫額	51
(3) 品種別 在庫額	51
第五節 生産額 및 生産費	51
가. 資料의 必要性	51
(1) 純生産額	51
(2) 總生産額	52
(3) 生産費	53
나. 總生産額	53
(1) 生産高	53
(2) 品種別 生産高	55
다. 生産費	55
(1) 原料費 및 委託製造費	55
(2) 品種別 原料費	55
라. 純生産과 純所得	56
(1) 附加價值	56
(2) 純生産과 純所得의 計算에 所要되는 補助資料	56
(3) 所得의 分類	57
第六節 販賣額의 分類	57

第一章 序 論

第一節 概 觀

人間智識의 發達과 文化의 發達은 반드시 正比例의 關係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前者는 分明히 後者의 原因이며 刺戟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人類가 갖이는 幸福에의 追求欲은 날로 增大하여 가고 있다. 生活水準의 向上에 對한 念願은 끊임 없이 持續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世界 모든 國家에 있어서 共通의인 頭痛거리로 登場하고 있다. 經濟的으로 先進國은 先進國대로 더 좋은 生活資料와 雇傭條件, 더 많은 賃金을 要求하는 아우성 가운데서도 販路(市場)가 漸次 縮少되니 苦憫이 아닐 수 없고 後進國은 그들대로 돈은 모자라고 일거리는 적은 데 人口는 자꾸만 불어나니 이또한 苦痛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頭痛거리”에도 不拘하고 世界는 全體的으로 보아 經濟가 徐徐히나마 發展해 나가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高度의 機械化와 技術의 向上 그리고 販路의 開拓을 通하여 그리고 後進國에서는 強力한 經濟開發計劃의 樹立과 實踐으로 雇傭의 增大와 國內消費材의 自由生産을 通하여 各各 漸進的인 發展을 보고 있다. 이것이 原因이 되고 結果가 되어 各國에서는 自國의 經濟力 測定에 對한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卽 産業의 構造(業種別, 規模別, 地域別, 分布) 投資支出, 生産等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한 測定의 方法은 勿論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研究하고자 하는 産業調査인 것이다.

이러한 必要性和 目的은 特別히 革命政府가 總力을 기울여 實踐에 옮기고 있는 第一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이 進行되고 있는 이때 더욱 重要하게 認識되는 것이며 마침 國際聯合의 經濟

(6)

社會理事會에서도 이의 實施를 各國에 勸告하고 있음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實踐에 옮김에 있어서 남에게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成功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는 좋은 計劃을 세워서 準備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産業調査에 對한 理論과 技術을 빨리, 많이 習得해야 한다. 本書는 이러한 目的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는다.

第二節 産業調査의 方式

(Types of demand for information on industry)

産業調査는 調査를 통하여 求하려는 資料의 型態에 따라 卽 어떠한 資料를 求하려 하느냐에 따라 그 方式이 英美式과 大陸式으로 二分된다.

가. 英美式

이 方式의 調査에서 求하는 資料는 主로 財貨의 生産額(Out-put of goods)이다. 그러므로 이 方式의 調査를 生産調査(Census of production)라고도 한다. 이것은 原來 英國과 美國에서 始作된 것임으로 英美式이라는 이름이 붙게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英國과 美國만이 이 方式의 調査를 實施한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歐羅巴)大陸國家中에서도 佛蘭西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이 方式의 調査를 實施하고 있었고 지금은 大部分의 大陸國家에서도 이 調査가 實施되고 있다. 이 方式의 調査를 實施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品種의 生産品이 얼마만큼 生産되고 있는가를 알므로써 育成할 業種과 抑制할 業種을 가려내는데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려는 것이다. 經濟的으로 先進國에서는 그들의 政策에 뒷바침이 되게하기 爲하여 이 英美式 調査卽 生産調査를 實施함이 普通이다.

나, 大陸式

이 방식의 調査에서 求하는 資料는 주로 構造即 事業體(第三節 가 參照)의 業種別, 規模別, 地域別 分布(Structure, i. e., type of activity, size and geographic distribution)와 資源의 利用度(level of resources utilized) 即 勞動과 機械의 利用度이다. 그러므로 이 방식의 調査를 構造調査(Census of Structure)或은 事業體調査 (Census of establishments)라고도 한다. 이 調査는 原來 白義耳, 獨逸, 丁抹같은 大陸國家에서 시작된 것임으로 大陸式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前述한바와같이 지금은 이들 國家도 英美式으로 轉換하고 亞阿와 中南美의 後進國에서 이 방식의 調査를 實施하고있다. 이러한 國家에서는 先進國家에서처럼 무엇이 얼마만큼 生産되는가를 알아보는것에 重點을 둔다는것은 無意味한 것이다. 특히 第二次産業이 發達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業種의 얼마만큼의 規模의 事業體를 어느 地域에 建設해야하며 勞動力的, 利用과 機械化的 問題를 講究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樹立을爲해서는 自然히 構造와 資源의 利用度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지 않을수 없다.

英美式調査 即 生産調査라하여 構造에 對하여는 全然調査하지 아니하고 大陸式調査 即 構造調査라하여 生産에 關하여는 決코 알아보지 않는것은 아니다. 어느쪽에 더 큰 比重을 두는 “나”에 따라 便宜上 決定되는데 不過한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序頭에 “주로”라는 말을 쓴것이다. 아무튼 그 差異는 目的의 差異라고도 볼수있다. 目的이 다르므로 準備事務나 計劃도 달라지는 것이다. 求하고자하는 統計資料가 어떤것이냐 하는 것과 對象으로하는 産業의 分野가 어느것이냐 하는 것이 달라질것이다. 또 이러한 差異는 “概念的 基礎事務” (conceptual framework)와 調査에 活用되는 方法과 機構에도 나타난다.

初期에 있어서는 兩者中 어느것임을 莫論하고 稀有調査(第三節가參照)에서나 經常調査(第三節나參照)에서 人口調査와 같이 施行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最近에 이르러서는 生産調査는 高度로 發達되어 分化되어가고 매우 자주 實行하게 되었고 그對象은 大規模 事業體에만 局限되고 大部分의 경우 郵便을 利用하게 되었다. 郵便 構造調査는 每十年 或은 더욱 느리게 調査하게 되고 對象 事業體로서는 規模에 關係없이 모조리 다 包含하게 되었으며 徹底히 他計主義에 依하게 되었고 往往히 人口 調査와 並行하여 實施되기도하였다.

經驗을 쌓아 나감에 따라 産業調査 實施에 對하여 相當한 自信을 갖이게 되고 또 成長해가는 經濟에 對한 正確한 測定이 要請됨과 아울러 새로운 開發計劃을 爲하여 여러가지 資料가 必要하게 되었다. 即 各國에서는 産業의 모든 樣相 다시 말하자면 그構造와 資源의 活用度 그리고 活動의 水準에 關하여 資料가 必要하게 된것이다. 그렇게 되고 보니 生産調査와 構造調査의 差異가 더욱이 흐려지게 되었다. 生産調査를 實施하던 나라에서도 그들의 調査項目을 擴張하여 産業의 構造와 資源의 利用度까지 包含하게 되었으며 構造調査를 하던 나라에서는 調査를 더욱 자주 實施하게 되었으며 生産과 그에 關聯된 여러가지 活動狀況을 調査하게 되었고 對象을 重要事業體만으로 制限하고 郵便法을 擇하게 되었다. 特히 後進國에서는 規樣의 大小를 不問코 모든 事業體로부터 構造와 資源의 利用度 그리고 活動의 水準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기 始作하였다. 왜냐하면 後進國에는 小規模 事業體가 數字的으로 優勢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찾아하는 比重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第二次 大戰 以後 各國 政府에서는 産業構造와 資源의 利用度에 關하여는 稀有調査, 活動의 水準에 關하여는 年例調査를 通하여 資料를 蒐集하게 되었다. 이러한 資料는 그저 大部分의 産業單位가 提供해주는 것 만으로 充分하지만 아주 詳細한 資料를

特別히 重要한 事業體로 부터 求하여야 하기 때문에 生産調査를 實施하던 나라에서는 對象을 擴大시켰으며 稀有調査인 全數調査를 年例調査인 部分調査와 併行하여 實施하게 되었다. 構造調査를 實施하던 나라에서는 必要한 資料를 이미 그들의 稀有調査를 通하여 蒐集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年例調査를 實施하여 活動의 水準을 알아보기만 하면 對象을 擴大시킨 셈이 된다. 이처럼 對象이 漸漸 擴大되어감에 따라 各國에서는 그들의 調査를 成功으로 이끌어 가기 爲하여 새로운 調査方法, 特別히 確率標本의 理論을 適用하기 始作하였고 小規模事業體에 對하여는 調査票를 따로히 作成하되 項目을 많이 줄이고 簡單하게 하였다. 小規模 事業體가 大部分이고 이들로부터 正確한 資料를 얻는데 많은 困難을 겪었던 後進國에서는 特別히 前述한 두가지 技術을 많이 適用하게 되었다.

第三節 産業調査의 種類

産業調査는 그 頻度에 따라 稀有調査와 經常調査의 二種으로 分類된다.

가. 稀有調査(Infrequent enquiries)

每十年 實施되는 産業國勢調査(Industrial Census)와 같이 頻도가 느린 調査를 稀有調査라 한다. 十年이라하여 반드시 十年이어야 한다는 理由는 없다. 九年이 될수도 있고 十一年이 될수도 있다. 何如間 자주 實施하지 않는 調査를 말한다. 이처럼 오래만에 한번씩 實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自然히 全數調査(Complete enumeration)가 되지않을수 없다.

이말을 거꾸로 表現하자면 全數調査는 規模가 매우 큰것이며 莫大한 人員과 費用이 드는 것임으로 自然히 자주 實施할수는 없게 되고 오래만에 한번씩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經常調査(Frequent enquiries, Current Surveys)

(1.0)

産業標本調査(Sample Survey of Industries)는 經常調査이다. 이것은 稀有調査와는 달리 每月, 每季, 每年或은 隔年으로 實施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주 實施하는 것임으로 이것은 稀有 分調 처럼 大規模인 全數調査를 할수 없고 自然히 小規模인 部分調査(Partial enumeration)를 하게된다. 거꾸로 말해서 部分調査이기 때문에 人員과 費用이 적게 드는 것임으로 자주 實施하게 되는 것이다. 經常調査는 이를 다시 그 頻度에 따라 月例調査, 季例調査, 年例調査, 및 隔年調査로 나눈다.

第四節 産業調査의 範圍

産業調査의 範圍(Scope)는 基本産業(basic or key industries), 即 鑛業(mining), 製造業(manufacturing), 建設業(Construction) 및 電氣, 가스, 스팀業(production of electricity, gas and steam)이다. 이것은 韓國標準産業 分類의 中 分類 10에서 59 까지를 總網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産業調査 云云함에 있어서는 原則上 基本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基本産業調査라 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産業調査라 하였을때의 産業은 너무나 莫然하여 무엇을 指稱하는 것인지 알 수없게 된다. 그것이 全體 産業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特定의 産業만을 말하는 것인지 分明하지 않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現在까지는 産業에 關한 調査로서 基本産業以外는 農業調査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基本産業調査를 그냥 産業調査라 한다면 그것이 農業調査와 混同될 念慮는 絶對로 없다. 그리고 앞으로 前記兩者以外의 다른 어떤 産業 例컨데 商業에 關한 調査를 한다면 거기다가는 商業調査라는 이름을 부치면 될것이다. 그것이 基本産業調査와는 分明히 다르고 이미 産業調査가 存在하여 있는限 그것과 混同될 念慮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基本産業調査의 基本을 구태여 固守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支障이 없으므로 우리는 便宜上 基本産

111

業調査를 그냥 産業調査라하는 것이다. 이것은 原則은 아니나 우리나라 統計調査上 하나의 約束인 것이다.

이처럼 産業調査의 範圍가 基本産業이라 함은 이미 잘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基本産業의 概念이 定立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數年前만해도 스팀業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産(查)調査의 範圍를 이와같은 基本産業으로 한다는 것은 國際聯合의 勸告案에서 나온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統計調査의 歷史가 짧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十八, 九世紀부터 傳統이 樹立된 나라에서는 매우 複雜하다. 初創期에 있어서 그들의 産業調査는 第二節에서 본바와같이 人口調査와 같이 實施되기도 하고 農業, 交通業, 其他와 混合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대개 基本産業을 別途로 取扱하게 되었지만 先進國中에서 若干의 나라들은 如前히 混線을 이르고 있는데도 있다. 또 基本産業을 모두 調査하는 나라는 事實上 매우 드물다.

第五節 産業調査의 對象

産業調査의 對象(Coverage)은 範圍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基本産業에 從事하고 있는 産業活動單位가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調査의 便宜上 事業體와 企業體로 나눈다. 이밖에 다른 單位도 있으나 이에 關한 詳細한것은 第四章에서 再論하기로 한다.

가. 事業體(Establishment)

鑛業과 製造業에 對하여는 事業體가 調査單位로 된다. 事業體라함은 個個의 工場, 作業場, 鑛山, 等과 같이 한가지 産業活動이 展開되는 一定한 物理的 場所(한곳)를 말한다. 한곳에서 한가지 産業活動을 하며 所有주가 하나(自然의건 法人의건) 인 産業活動單位가 事業體이다. 그것은 財産目錄, 賃金台帳等

(1 2)

과 같은 必要한 記錄이나 帳簿를 獨立的으로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下에서는 이것이 매우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이다.

나. 企業體(Enterprise)

建設業과 電氣, 煤氣, 스팀業에 있어서는 企業體가 調査單位이다. 企業體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事業體가 모인것이다. 그러므로 한 個의 事業體가 곧 한 個의 企業體가 될 수도 있고 大部分의 경우 한 個의 企業體는 産業活動의 性質에 따라 數個의 事業體의 集合體이다.

왜 事業體는 鑛業 및 製造業에서, 企業體는 建設業 및 電氣煤氣, 스팀業에서 各各 調査單位가 되는가에 對하여는 後述키로 한다.

第六節 産業調査의 沿革

非單 이 産業調査에 對해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學問이나 現象 或은 事業에 對한 沿革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觀察의 對象이 되는 것 自體를 理解하는데 크게 또 여러가지 面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産業調査의 沿革을 여기서 간단히 紹介코저 하는 바이다.

가. 英美式調査

(1) 1800-1899

生産調査를 最初로 實施한 나라는 佛蘭西와 美國이다. 前者는 1669年, 1778年, 1840年, 1861-65년에 實施하였고 後者는 1809年부터 每年 (1829年 除外) 實施하였다.

이러한 調査의 結果로 얻어진 經驗에 비추어 佛蘭西와 美國은 그들의 調査의 項目을 늘이고 範圍를 擴大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始初에는 兩國共히 生産의 量 및 額만 調査하였다.

佛蘭西는 毛織物에 對해서만 調査하고 美國은 모든 製造業에 對하여 調査하였다. 그런데 佛蘭西는 第二回 調査때부터 範圍를 擴大시켜 生産品에 礦物性, 動物性 및 植物性産物까지 包含시켰다. 美國도 範圍를 擴大하여 1839년에는 鑛業을, 1849년에는 建設業을, 1819년에는 商業을, 1849년에는 水産業을 包含시켰다. 産業生産의 水準을 說明할수있는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佛蘭西는 1840년에 雇傭도와 生産에 使用된 “發動機, 火力, 및 機械” 그리고 消費된 原料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기 始作하였다. 美國은 1819년에 雇傭도와 賃金, 使用된 機械, 投資된 資本 消費된 原料의 種類와 量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美國 産業調査에서 生産調査를 實施하는 主目的은 (1) 産業의 所得과 損失 그리고 (2) 産業別 特徵, 成長 및 重要性을 決定하는 資料를 蒐集하려는데 있었다.

生産調査實施의 目的이 擴大되어 감에 따라 美國과 佛蘭西兩國은 信憑性있는 數字를 얻는데 여러가지 困難을 겪게 되었다. 例컨데 美國의 모든 調査報告書, 特히 그중에서도 初期에 施行되었던 調査報告書에 나타난 資料는 不完全하고 疑問視되는 것이 많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佛蘭西는 1860年代의 調査를 爲해 四年이란 歲月을 消費했다. 이때문에 佛蘭西는 그들의 生産調査를 1931년까지 再開하지 않았다. 美國은 이러한 困難性을 解決하기 爲하여 對象을 變更하고 方法을 바꾸어 보았다. 1849년부터는 家庭에서 施行되는 産業活動은 除外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小規模 事業體는 資料蒐集이 至極히 困難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調査票는 中央에서 直接設計하되 各各 다른 六種의 調査票를 利用하였다. 이렇게 하기 爲하여는 準備事務 即 計劃이 過去보담 더 많아져서 세사람의 專問家를 追加雇傭하였다.

1849년부터 이러한 變更을 加한 美國의 産業調査는 그때부터 特殊性을 示顯하게 되었다. 1869년의 産業調査를 評價한 結果

를 볼것 같으면 同調査의 成果가 매우 좋지못하다. 그 理由는 同調査를 人口調査와 同時에 實施하였기 때문이다. 美國에서는 産業調査票의 回收를 그때까지는 人口調査에서와 마찬가지로 地方公務員 特히 警察이 담당하였던 것인데 上述한 失敗의 苦盃를 마시고 난뒤 即 1879年 産業調査때 부터는 따로 調査員을 採用하여 調査票를 回收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調査票의 回收라 함은 調査를 他計主義 即 面接을 通해 實施한 것이 아니고 調査票를 申告者에게 配付하여 申告者로 하여금 記入케 한 것이기 때문에 調査員은 各事業體에 가서 記載完了된 調査票를 回收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調査票도 業種別로 다르게 하였고 中央 및 指導員을 任命하여 調査員을 指導하게 하였다.

캐나다와 新西蘭과 南阿聯邦이 그들의 生産調査를 始作했을 때 前記한 二個 國家의 經驗을 많이 參酌하였던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例컨대 캐나다는 第一回 生産調査時 (1) 調査範圍를 鑛業, 製造業 및 電氣, 캐스業으로 하고 對象(調査單位)은 事業體로 하였으며 (2) 調査項目을 構造, 雇傭度, 賃金 및 給與額, 動力施設, 資本投資, 財貨의 生産 및 原料消費로 하였다.

(2) 1900-1939

이 期間에 이르러 生産調査는 17世紀 末期보다 産業活動의 水準을 훨씬 더 效果的으로 測定하는 것으로 發展하였다. 調査의 範圍는 制限되었으나 頻度는 增加되었다. 完全하고 相互聯關性있고 正確性있는 資料를 얻기 爲하여 調査項目中 약간은 廢棄되었다. 反面 殘留된 調査項目은 더욱 明瞭하게 調査表에 反映시켰다. 同時에 經濟的 重要性을 띠운다고 看做되는 項目은 深加시켰다. 生産調査는 完全히 人口調査로 부터 分離되었으며 郵送法이 採擇되었다.

小規模 事業體로 부터 資料를 (特히 固定資産과 流動資産,

生産費와 生産額에 關한 數字) 蒐集하기가 매우 困難할뿐만 아니라 費用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各國은 그들의 調査對象에서 小規模事業體는 除外하였다. 例를 들면 카나다는 1901 년에 實施한 第一回 調査時 對象을 從業員 5 名 以上の 事業體(鑛業 製造業, 電氣, 캐스業의)로 制限하였다. 1918 년에 第一回 調査를 實施한 新西蘭은 從業員 2 名 以上을 가지고 動力을 使用하는 事業體(製造業, 電氣, 캐스業의) 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美國에서는 1904 年에서 1921 年 사이의 生産調査에서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額이 500 弗 以上인 事業體에 限하여 對象으로 하였다. 다 그 後 부터는 이 基準을 올려서 5000 弗 以上으로 하였다. 同時에 美國은 그들의 産業調査에서 建設業은 除外시켰는데 그 理由는 小規模 事業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關한 調査는 매우 困難한 까닭이었다. (또한 美國에서는 鑛業도 製造業 및 建設業과는 別途로 每十年 調査하였다. 그後 電氣 캐스業은 每二年 調査하게 되었다. 1929 年과 1939 年의 産業調査에서는 製造業, 鑛業, 建設業 및 電氣, 캐스業을 모조리 따로 따로 調査하였다. 特히 美國의 産業調査에 關한限 그것은 製造業調査를 指稱함을 附記해 둔다. 事實上 다른 것에 對한 調査의 傾向이 方法에 製造業調査에 對한 것이나 別差 없는 것이다) 그러나 建設業에 關한 資料는 그것대로 必要性和 重要性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카나다는 1935 年에, 新西蘭은 1921 年에 그리고 美國은 1929 年과 1939 年에 各各 建設業을 包含시켰다.

政府나 民間이 다 같이 産業에 關한 統計資料는 더 자주 要請하게 되어 카나다, 新西蘭 및 美國은 産業國勢調査의 頻度を 短縮시켰다. 카나다는 1921 年에 年次調査를 始作했으며 新西蘭은 1918 年에 年次調査를 始作했고 美國은 1904 年 부터는 每五年, 1921 年 부터는 每二年 調査를 實施하였다. 要請되는 資料의 精度도 分化하여 카나다에서는 1917 年 調査時 財貨의 生産額과 原料의 消耗額에 關하여 아주 詳細하게 資料를 蒐集하였

(1 6)

으며 美國은 1937年부터 調査項目에 在庫額을 附加시켰으며 1939年 부터는 固定資産의 年間支出額을 附加시켰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1909年 調査時 부터 (1)附加價値의 概念(財貨와 서비스의 總生産額에서 他事業으로부터 購入한 財貨와 서비스로서 生産에 消費된 것을 빼것)을 展開시켰으며 (2) 産業上の 損益을 計算하려는 努力은 拋棄하였다. 이처럼 強調點을 變更한 理由는 (1) 여러 事業體間에 重複되어 算出되는 總生産額 보다는 좀 더 正確한 産業活動水準의 測定을 期해보자는 것과 (2) 損益決定 即 減價償却額, 賞額, 税金 等等的 算出이 極히 困難하다는 것이었다.

한層 正確하고 相互關性있고 完全한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美國은 (1)(2) 固定資本과 流動資本에 關한 項目을 削除하는 한便 (2) 다른 項目에 對하여는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申告者의 協助度나 帳簿의 備置 等에 關한) 質問의 語順配列等을 바로 잡았으며 概念을 明白히 하고 銘心書를 자세하게 만들었다. 例컨대 調査年間の 月平均 被雇傭者數는 1909年 부터 特定한 한달의 被雇傭者數로 代置되었으며 1929年 調査에서는 生産額 代身에 販買額을 調査했으며 그 後에는 다시 販賣額 代身에 出荷額을 調査토록 하였다.

蒐集코저 하는 資料의 內容이 分化되어감에 따라 所要되는 人員이 增加되어가고 또 産業關係 專問家라야 한다는 理由 뿐만 아니라 各國은 生産調査實施를 爲한 새로운 技術을 發展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形便에 人口調査에 動員되던 人員과 裝備를 가지고 그대로 生産調査에 轉用한다는 것이 不可能하게 되자 技術의 發展이란 問題에 다시금 부닥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問題는 調査表의 配付 및 送付를 郵送으로 함에 따라서 若干 解決되기도 하였다. 對象事業體는 事業體名稱, 所在地(住所), 業種(生産品名), 規模(從業員數) 등이 記載되어 있는 事業體名簿에서 밝혀진다. 이리하여 美國은 1904年 産業

調査 부터 事業體 名簿와 郵便을 利用하였다. 郵便法을 擇하게 되므로 해서 調査員 (現地面接員)을 두는 것 보다 훨씬 費用이 적게 들도록 되었을뿐만 아니라 生産調査를 爲한 固定職員の 配當을 確固히하게 하였다. 그 結果調査의 計劃과 實施를 더욱 注意깊게 할 수 있게 되고 繼續的인 經驗의 活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1900年에서 1939年 사이에 生産調査를 實施한 나라가 더러 있다. 濠洲는 1906年 부터 每年, 브라질은 1920年에, 英國은 1907年 부터 隨時로 愛蘭은 1926年 부터 每二年, 멕시코는 1930年 以來 每五年, 波蘭은 1930年 부터 每年 實施하였다. 이들 諸國家는 一般的으로 生産調査를 最初에 實施하였던 前示 國家의 經驗을 利用하여 (1) 産業活動의 重要한 部面만을 자주 調査하였으며 (2) 鑛業, 製造業, 建設業 및 電機, 개스業의 大規模 事業體에 限하여 調査對象으로 삼았고 (3) 調査表配付 및 送付는 郵便法에 依하였거나 郵便法과 面接法을 混用하였으며 (4) 産業別로 調査表를 따로이 設計하였다.

(3) 1940年 以後

第二次 世界大戰의 終戰後 生産調査를 實施하던 나라들은 戰後의 必要度나 必要性을 參酌하여 그들의 調査를 蘇生擴張시켰다. 例컨데 카나다는 每年 實施하는 國勢調査의 對象에 規模에 關係없이 即 從業員數에 關係없이 모든 事業體를 包含시켰으며 固定資産의 年間 支出額과 在庫額을 새로이 調査項目으로 追加시켰다. 英國은 完全雇傭政策에 所要되는 産業統計資料를 系統的으로 研究, 檢討한後 1948年에 調査를 始作하였는데 그것은 (1) 모든 産業의 構造와 雇傭度, 在庫額, 生産에 關한 年間 資料와 (2) 資源의 利用度, 總生産額의 內譯, 生産費에 關한 것 과 顧客別 販賣內譯에 關한 資料를 大規模 事業體로 부터 대개 每三年 수집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었다. 또한 英國은 固定資産의 年間支出額을 年次國勢調査項目에 包含시켰다. 19

43년에 愛蘭은 (1) 從業員 3人 以上の (鑛業, 製製業, 建設業 및 電氣, 깨스業) 事業體를 對象으로 모든 樣相에 關한 資料蒐集을 爲하여 年次調査를 始作하였으며 (2) 同調査를 補完하기 爲하여 非定期的으로 小規模事業體에 對한 調査를 따로 實施하였다. 1950년에 墨西哥는 (1) 建設業은 除外하고 모든 事業體로부터 一般的인 資料를 蒐集하고 (2) 大規模 事業體로부터는 生産額과 生産費에 關한 詳細한 資料를 蒐集할 計劃을 세웠다. 또한 通信業과 交通業에 關한 資料蒐集計劃도 考慮하였다. 美國은 (1) 每五年 産業調査를 實施하되 一般的인 것과 細分된 資料 두가지를 調査하고 (2) 年次調査에서는 産業活動의 重要한 部門에 限하여 細分된 資料를 蒐集할 計劃을 蒐集하였다. 美國은 1947年 産業調査에서 對象을 1名 以上の 被雇傭者를 두고 있는 事業體로 擴張시켰으며 1953年 調査에서는 被雇傭者가 한 사람도 없는 事業體도 包含시켰다. 美國은 그때까지 産業調査의 範圍로 製造業만을 限定시키고 있었으나 그後 부터는 鑛業, 建設業 뿐만 아니라 交通業, 商業 및 서비스業도 包含시킬 計劃을 세웠다. (電氣, 깨스業에 對한 統計는 行政系統을 利用한 報告에 依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1949年 부터 美國은 産業標本調査를 實施키로 하였는데 (1) 從業員 1名 以上の 事業體에 對하여 여러가지 活動狀況을 一般的으로 調査하며 (2) 어떤 重要한 活動에 關하여는 아주 詳細하게 調査키로 하였다.

前述한바와 같이 生産調査를 實施하는 많은 國家는 그들의 計劃目標을 擴張시키는 한便 費用이 적게 들고 時期에 適合하고 正確한 資料의 蒐集을 保障하기 爲한 새로운 方法을 採擇하였다. (1) 一般的 資料蒐集을 爲한 年次調査와 (2) 小規模事業體로부터의 資料蒐集을 爲하여 確率標本理論이 利用되었다. (1) 캐나다와 英國에서는 固定資産의 支出額에 對한 年次調査에서, (2) 印度에서는 大規模 事業體와 農村의 小規模 事業體

大規模 → 自計主義
小規模 → 他計主義 (19)

에 對한 一般的 資料蒐集에서 (3) 愛蘭에서는 從業員 3人以下의 小規模 事業에 對하여 (4) 美國에서는 製造業年次調査에서 各各標本理論이 適用되었다. 確率標本理論을 適用함으로써 國勢調査時보다 費用이 훨씬 덜 들게 되고 早速히 結果를 낼수 있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特히 小規模事業體에서 蒐集되는 資料가 더욱 正確하고 信憑性이 높은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標本調査를 할때는 勿論國勢調査時와는 달리 抽出된 小規模인 標本事業體에는 더많은 費用이 들기 때문에 資料가 正確하고 信憑性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例컨데 印度에서는 大規模 事業體에 對한 年次調査에서는 調査票 配付와 送付를 郵便法에 依하고 調査票記入은 自計主義로하고 있음에 反하여 小規模事業體에 對한 標本調査에서는 他計主義에 依하도록하여 調査員이 直接申告者를 訪問토록 하였던것이다. 캐나다, 英國, 멕시코 및 美國에서는 調査票를 小規模 事業體用과 大規模 事業體用의 두가지로 만들어 前者는 아주 간략하게 主要項目만 調査토록 하고 後者は 좀複雜하고 甚한 項目도 包含시켰다.

나. 大陸式調査

(1) 1800-1899

構造調査 即 事業體調査를 最初로 實施한 나라는 白耳義인데 1846년에 實施하였다. 그다음에는 獨逸이 1875년에 丁抹이 1897년에, 諾威가 1895년에 各各 實施하였다.

上記 諸國家가 實施한 産業調査는 그後의 事業體調査에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들은 人口調査나 農業調査에 對한 補助調査로서 産業調査를 實施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非農 事業體를 包含시켰다. 即 이들 諸國家가 實施한 事業體調査에서는 모든 産業 即 鑛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 가스業의 業體를 包含시켰을뿐만 아니라 大部分은 경우에는 다른 型態의 事業體도 對象으로 삼기도하였다. 그들은 産業의 構造 (即 業種別, 地域別

規模制 事業體分布)와 使用된 資源(即 勞動, 動力施設, 機械)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例를 들면 白耳義가 1846년에 實施한 調査에서는 모든 基本産業과 手工業 및 商業의 事業體 뿐만 아니라 移動(自由)修理工(넴비나 솃페우는 사람 같은것)마저 包含시켰던 것이다. 이때 蒐集한 資料는 事業體數와 그 特徵, 人件費, 및 動力施設이었다. 獨逸에서 最初로 實施된 構造 調査에서의 對象과 項目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丁抹이 實施한 構造 調査에서는 範圍를 若干 좁혀서 모든 基本産業만으로 限定시켰다. 構造 調査와 人口 調査間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었기 때문에 前記 諸國家中 諾威만 除外하고는(每年 實施하였다) 모든 國家가 이 두가지 調査를 同時에 實施하였다.

構造 調査를 通하여는 事業體의 分布를 알아볼수는 있지만 生産額과 生産에 關係되는 諸要素에 關한 資料는 얻을수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白耳義는 1866年 調査時 이 點을 參酌하여 從業員數, 人件費, 作業時間數 및 生産額에 關한 資料도 蒐集하였다. 1880年과 1896年에도 이와같이 하였다. 이러한 資料를 모든 基本産業에 對하여 蒐集하려 했던 白耳義는 努力은 첫번(1886)부터 失敗하여 調査結果報告書를 發刊치아니 하였다. 이와같은 失敗原因은

(a) 너무많은 事業體로부터 너무 많은 資料를 蒐集했다는 事

(b) 産業 調査를 人口 調査와 같이 實施했다는 것이다.

이點을 參酌하여 1880年 調査時는 資料 即 調査項目을 重要한 것으로만 골라 縮少시켰고 人口 調査와 分離시켰다. 그러나 白耳義 當局은 1880年 調査項目을 너무 縮少시켰다고 생각하리만큼 不滿을 갖게되어 1896年 調査時는 다시 項目을 늘였다. 白耳義는 1896年 調査時도 別로 滿足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基本産業의 事業體로 부터 生産과 그에 關聯된 資料를 蒐集한다는것은 너무 어려운 問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結局은

白義耳의 産業調査도 構造調査로 還元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동안 몇번 試驗해 보았던 生産調査를 拋棄하고 1910年以後부터는 다시 構造調査를 實施하였다.

(2) 1900-1939

이期間 동안에는 前世紀에 이미 構造調査를 實施했던 諸國이 그것을 繼續하였고 새로히 많은 大陸國家가 이 調査를 始作하였다. 例컨데 捷코스로바키아는 1930년에 希臘은 1920년에 和蘭은 1930년에 瑞典은 1831년에, 瑞西는 1905년에 各各構造調査를 始作하였다. 이와같이 構造調査에서는 事業體의 構造와 使用된 資源에 關하여 調査하되 人口調査와 同時에 實施되고 있었던것을 注目할만한 일이다. 例컨데 불가리아, 捷코스로바키아, 獨逸, 和蘭, 瑞典, 및 瑞西는 그들의 構造調査에 모든 非農事體를 包含시켰다. 또 丁抹은 1925의 調査時 商業과 通信業의 事業體도 包含시킨다.

이 밖에도 大部分의 國家는 그들의 構造調査에 産業活動의 水準에 關하여도 調査하였다. 이러한 補助調査를 實施하는 方法은 두가지이다.

- (a) 年次로 或은 그보다는 느리게 生産調査와 비슷한 調査를 實施하되 對象은 大規模이고 重要한 事業體에 限定시킨다.
- (b) 構造調査를 實施하되 그 調査票에 生産과 關聯된 項目을 追加한다.

丁抹과 和蘭 및 瑞典은 첫째 方法을 利用한 나라들이다. 丁抹은 1916년부터 每年 生産調査를 實施하기 始作하였으며 從業員 5名 以上인 事業體 (製造業 및 電氣, 개스業의)를 對象으로 하였다. 같은 해에 和蘭도 이와 비슷한 調査를 實施하였다. 瑞典은 1913년부터 生産調査를 始作했는데 每年 實施하기로 하였고 範圍는 鑛業, 製造業 및 電氣, 개스業이고 對象은 從業員 5名 以上의 事業體이었다. 希臘과 諾威는 둘째 方法을 採擇한 나라이다. 前者는 1940年 構造調査時 資本投資額, 生産額 및 生

(2 2)

産費를 追加項目으로 調査하였고 後者는 1936年 調査時 人件費와 現金收入에 關한 資料를 追加的으로 蒐集하였다.

(3) 1940年以後

構造調布를 第二次 世界大戰 以前에 이미 實施하여오던 大陸 國家는 戰後에 그것을 蘇生시켰다. 그들을 大部分은 産業活動의 水準에 關한 年次調査를 始作하였거나 擴張시켰다. 數個 國家에서는 稀有調査와 小規模의 年次調査計劃을 樹立하였는데 그리하여 (1) 前者는 後者에 對하여 有効한 基礎를 提供하였으며 (2) 産業活動에 關한 一般的 資料를 全體 基本産業에 對하여 蒐集토록 하였다. 이들 諸國家는 그밖에도 生産額과 生産費에 關한 仔細한 資料를 大規模事業體로부터 蒐集하였다. 上記 諸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그들중 얼마는 (1) 確率標本理論을 採擇하였으며 (2) 小規模 事業體에 對하여는 아주 簡單한 調査票를 使用하였다.

아와같은 發展을 白義耳, 和蘭, 瑞典 및 諾威에서 나타났다. 白義耳는 1946年에 年次調査를 始作하여 가장 重要한 産業의 모든 事業를 對象으로 하여 事業體의 特徵, 資源 및 活動의 水準 即 雇傭度, 賃金 및 俸給, 生産額, 原料 및 其他費用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和蘭은 (1) 年次調査에 어떤 産業과 小規模 事業體를 附加시켰으며 (2) 投資支出에 關한 資料도 蒐集하기 始作하였다. 뿐만 아니라 (3) 構造調査 即 事業體調査에서 얻어진 事業體名簿를 母集團으로 利用하여 年次調査인 標本調査의 標本을 抽出하였고 (4) 小規模 事業體에 對하여는 簡單한 調査票를 使用하였다. 諾威는 1950年에 實施한 年次生産調査時 小規模事業體에 對한 標本調査를 함께 施行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産業에 對한 雇傭도와 生産額에 關한 一般的 計數를 推計하였다. 瑞典이 實施한 1951年 調査는 재미있는 것이다. 即 (1) 1931年 構造調査와 비슷한 點이 많았으며 (2) 結果를 基準으로 삼아서 그것을 利用하여 重要産業의 大規模事業

體로 부터 活動의 水準과 其他 資料를 仔細하게 調查하였다.

다. 其 他

(1) 1940年 以前

많은 國家는 1940年 以前에 모든 基本産業의 모든 事業體에 對하여 構造, 雇傭度, 人件費, 動力施設, 其他機械, 生産額, 生産費 그리고 어느 경우엔 固定資産 及 流動資産額에 關하여 調查하였다. 이러한 調查는 生産調查와 構造調查를 混合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混合調查에서 調查한 나라와 年數는 (1) 智利, 1914年에서 1926년까지 每年 (2) 알젠틴, 1914年 및 1935年後는 每二年, (3) 埃及, 1927年 및 1937年 (4) 日本, 1937年 (5) 比律賓, 1903年, 1918年, 1939年 (6) 우루가이, 1936年 (7) 베네즈에라, 1936年이다.

前記 諸國의 大部分은 그들의 産業活動이 工場, 手工業者, 家庭 等に 分布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小規模 單位도 對象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混合調查에서는 小規模의 事業體로 부터 複雜하고 자세한 資料(例컨데 資本投資額 및 生産額과 生産費 같은 것)를 蒐集하였기 때문에 많은 難關에 부딪쳤으며 그 結果로 蒐集된 資料가 粗雜한 것이 되고 말았고 費用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러한 難關을 解決하고 同時에 産業活動의 特徵과 水準에 關한 有用한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前記 諸國中 數個國은 小規模 事業體에 對하여는 簡略한 調查票를 使用하기로 하였다.

(2) 1940年 以後

第二次 世界大戰 後에 브라질, 埃及, 가테마라, 日本, 土耳其 및 우루가이는 그들의 基本調查에서 對象과 項目을 擴張시켰다. 머마는 範圍를 製造業으로 局限시키고 모든 事業體에 對하여 構造, 資源의 利用度 및 活動의 水準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였다. 알젠틴, 브라질, 埃及 및 가테마라는 範圍를 鑛業, 製

(24)

痛

造業 및 電氣, 煤業으로 하고 모든 事業體로 부터 資料를 蒐集하였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建設業도 包含시켰다. 브라질과 土耳其의 調査는 每十年 實施하는 稀有調査이고 範圍를 넓혀 基本産業이 아닌 다른 經濟活動單位도 包含시켰다. 또 前者는 産業調査를 人口調査와 함께 實施하였다. 埃及와 가테마라는 每五年, 알제틴은 每二年, 日本은 每年, 每五年 調査를 實施하였다.

前記 諸國은 모두 完全한 組織體로 되어 있지 아니한 많은 小規模 事業體를 不過 몇개 되지 아니한 大規模 事業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複雜한 資料蒐集에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蒐集에 費用이 적게 들었고 結果는 매우 좋았을뿐만 아니라 時期에 알맞도록 資料處理를 끝내었다. 大部分의 國家는 (例컨데 알제틴, 버마, 가테마라, 日本, 土耳其 및 우루가이) 그러한 難關을 克服하기 爲하여 項目을 다음과 같이 制限하였다.

첫째 構造, 資源의 利用度 및 모든 (大規模, 小規模 區分 없이) 事業體의 活動水準에 관한 事項.

둘째 大規模 事業體에 限하여 投資額, 生産額 및 生産費. 이^票와같이 하여 이들 諸國은 小規模 事業體에 對하여는 簡略한 調査表의 使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가테마라는 調査表를 더욱 簡單하게 만들었는데 項目의 質疑事項을 줄였다. 例컨데 調査年間 支拂된 人件費 代身に 最終月에 支拂된 人件費로 簡素化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蒐集困難의 項目에 관한 問題를 解決하여 나갔던 것이다. 이밖에도 有用한 資料를 蒐集하기 爲하여 數個國家는 (例컨데 日本과 土耳其) 調査方法으로서 他計主義를 採取하였다. 그리고 土耳其는 小規模 事業體에 對하여는 標本調査를 實施하였다.

第七節 우리나라의 産業調査

우리나라의 産業調査는 1955년에 처음으로 韓國銀行에 依하

여 實施되었다. 比律賓이나 버마와 같은 東南亞 諸國, 베네즈에라나 가테마라 같은 中南美 諸國 即 우리가 흔히 後進國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 國家가 이미 第二次 世界大戰 以前에 產業調查를 實施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前節 다項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이 開始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事實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開始되었던 것은 多幸한 일이었으며 이일을 爲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韓銀의 關係職員들에게 뜨거운 謝意를 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後는 1958年과 1960年에 產業銀行에 依하여 實施되었다. 以上 세 調査는 모두 全數 調査이었기는 하나 頻度가 잦은 것이어서 稀有 調査라 할 수 없다. 全數 調査라 하여 반드시 稀有 調査이어야 할 理由가 없고 稀有 調査라 하여 반드시 全數 調査인 것은 아니다. 前節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國家에서는 그들의 年例 調査에서도 全數 調査를 實施하였고 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 차례에 걸쳐 實施된 產業 調査의 方式이 大陸式이었는지 英美式이 있는지 分明치 않다. 當事者인 韓國銀行과 產業銀行이 다 같이 이에 對한 解明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實施한 產業 調査를 그들 스스로가 “鑛業 및 製造業 事業體 調査”(Census of mining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라 부르고 있으니 事業體 調査 即 構造 調査인 大陸式을 擇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報告書에는 왜 大陸式을 擇하였는가에 對하여는 說明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理由를 잘 알 수 없으나 이러한 調査를 새로이 實施한다는 點에서 또 經濟的으로 後進性을 甞치 못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不得已 取해진 措置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一~~

그러나 產業銀行의 1960年 調査表를 볼 것 같으면 構造에 關한 것은 調査項目中에서 三分之一 밖에 찾아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머지 三分之二는 生産에 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斷言해서 大陸式이라 하기는 困難한 것 같다. 이러한 矛盾(事實은 矛盾도 아니다)은 非單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世界各國이 經驗하고 있는 것이다. 前節의 多項에서 본 混合調查의 一種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實施할 1963年 産業調查는 英美式으로 할 것인가 大陸式을 따를 것인가? 兩者間의 差異가 模糊해진 지금에 와서 이를 區別해 보고자 하는 態度 自體가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억지로 區別하기 爲한 區別인 것 같다. 그러나 嚴格히 그리고 冷靜히 생각해 보건대 兩者는 分明히 區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必要한 事業體에 있어서 財貨의 生産에 關한 資料가 政策의 樹立에 必要한 先進國과는 달리 아직도 必要한 事業體가 設立되어 있지 아니하며 必要한 生産을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産業의 構造에 關한 資料가 政策樹立에 必要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얼마만큼 生産하고 있는가에 對하여서가 아니라 그러한 必要한 財貨를 그만큼 生産하기 爲하여는 어느 程度의 規模의 그리고 어떤 業種의 事業體가 어느 地域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必然코 生産調查 보다는 構造調查를 하지 않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卽 大陸式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調查項目의 決定, 調查案設計, 調查區設定等 우리의 準備事務에 많은 影響을 주는 것이다. 하기가 英美式이고 大陸式이건 그것의 區別이나 決定이 重要한 것이 아니라 調査나 成功的으로 完遂하여 資料만 더 正確한 것을 얻으면 그만이지 아니겠느냐고 反問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爲하여는 準備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準備에 關係있는 것이고 보면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以上 셋 調査의 範圍는 모두 鑛業과 製造業에 局限되고 있었다. 왜 이 두가지에 對해서만 調査했는가는 分明치 않으나 처음으로 實施되는 것이어서 可及的 繁雜을 避하기 爲한 것이었

다고 짐작된다. 對象은 事業體이다. 建設業이 아닌限 鑛業과 製造業에 對해서라면 事業體가 가장 適合한 單位인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國際聯合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 있다. (第三章 參照) 企業體가 아니고 事業體란 點에서는 共通的이나 規模에 있어서는 달라졌다. 1955年 및 1958년에는 從業員 5人 以上の 事業體를 對象으로 하였는데 1960年 調査時는 이를 擴大시켜 從業員 3人 以上으로 하였다.

우리가 1963年에 實施할 産業調査의 範圍는 어느程度로 할 것인가? 이 問題에 對하여는 各各 相異한 두가지 主張이 있다. 基本産業 即 鑛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 깨스, 스팀業 全體로 하자는 것과 基幹産業中 鑛業 및 製造業에 限하여 하자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主張의 根據를 살펴 보자.

첫째 實施한 機關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세차례에 걸쳐 産業調査가 實施되었으니까 相當한 經驗을 쌓음이 되고 어느程度 自信을 갖게 되었으니 이번 부터는 基本産業 全體를 包含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앞으로는 過去처럼 頻繁히 實施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每十年의 稀有調査를 하게 되는바 이번 機會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앞으로 十年間 못하게 될 것임으로 지금 부터 (좀 難關이 있더라도) 함께 實施하는 것이 좋다.

둘쨋번 主張은 이에 對한 修正案이다. 基本産業 全體를 할수 없으니 鑛業과 製造業만 하자는 것이다. 그 理由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電氣, 깨스, 스팀業에 對하여 생각하여 보자 後者의 둘 即 깨스, 스팀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化 되어 있지 않다. 事實上 存在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産業調査의 範圍에 包含시킨다는 것은 意味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自動적으로 除外된다. 그리고 電氣業

을 말할 것 같으면 五·一六 軍事革命 以後 電氣三社의 統合으로 말미암아 實際로 우리나라에는 電氣會社가 하나 뿐인데 이것을 相對로 調査云云하는 것은 웃은 일이다. 구태여 우리가 調査集計하지 않더라도. 韓國電力株式會社에서 나오는 月報나 年報로 족하다 設令 우리가 調査를 한다해도 그 內容은 前記 月報나 年報의 內容과 꼭 같은 것이 될 것이니 아무 價値가 없다. 그러니까 電氣業도 結局은 除外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建設業에 對하여 생각하여 보자 이것은 電氣, 깨스, 스팀業과는 달리 相當히 많은 業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包含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따른다. 調査의 單位인 業體를 찾기가 힘들고 그 單位가 鑛業이나 製造業의 單位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調査의 單位를 찾기 힘들다는 것은 建設業 關係會社 或은 其他 型態의 法人 或은 自然人의 一定한 場所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即 그들은 그들의 事務室을 固定된 場所에 두고 있지 않다. 規模가 아주 큰 會社라면 몰라도 웬만한 것이라면 그들의 工事現場이 곧 그들의 事務室이기도 하다. 設令 다른 곳 (工事現場이 아닌 곳)에 事務室이 있다 해도 看板을 내걸어 놓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다. 이러한 問題는 先進諸國에서도 頭痛거리로 되어 있는 모양이나 우리 나라에선 좀 甚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調査한다 해도 많은 一部分이 漏落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런 數字를 내어봤자 아무 所用이없다. 그리고 鑛業과 製造業에 있어서는 單位가 事業體임에 反하여 建設業에 있어서는 企業體가 調査單位이다. 그러므로 數많은 調査員에게 兩者의 差異를 說明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들을 잘 訓練시켜 兩者를 區別할줄 알게 만든다 해도 實際로

調査員이 各自의 調査區에 들어가서 實査를 할적에 이를 잘 銘心하여 一律的으로 混亂없이 調査票를 記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매우 疑心스러운 일이다. 必然코 이들 調査員은 自己 調査區內에 있어서의 製造業, 鑛業, 建設業의 事業體 或은 企業體를 對象으로 하는데 많은 混線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莫大한 經費를 들여 施行한 産業調査는 失敗하고 말 것이다. 벨돌 잡으려다 짐돌 잃어버리는 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無謀하고 危險한 짓은 避하게 範圍가 줄더라도 正確한 것을 얻는데 重點을 두기 爲하여 建設業도 빼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主張을 갖고 많은 討議가 있는 끝에 後者가 採擇되어 1963年 産業調査에서도 範圍를 鑛業과 製造業으로 限定키로 하였다.

1963年 産業調査의 對象은 事業體로 할 것이다. 企業體를 擇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되 過去보다 大幅 擴張시켜 規模를 從業員 5人 以上 或은 3人 以上 等으로 하지 않고 1人 以上으로 하였다. 即 ~~規模에 關係없이 存在하는 모든 事業體로 삼았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鑛業과 製造業에 있어서는 企業體에서 보다 事業體에서 보다 正確하고 보다 迅速하고 보다 容易이하게 蒐集할 수 있다. 따라서 外國에서도 大部分 그렇게 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하고 있다.

둘째 從業員 3人 以上으로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漏落이 많아진다. 왜냐 하면 申告者가 故意的으로나 無意識的으로 從業員數를 多少 申告하는 傾向이 있다. 故意的으로는 産業調査에 對한 좋지 못한 認識 即 이것이 課稅에 關係하지 않나 하는 先入感 或은 偏見 때문에 될 수록 이 調査를 忌避하기 爲하여 從業員數를 적게 申告

(3 0)

한다. 無意識的으로는 申告者가 調査에 對하여 協助的 이라도 從業員數(worker)의 定數를 잘 把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被雇傭者(employee)와 混同하여 事實上 從業員數는 3人 以上이더라도 被雇傭者數가 2人 以下이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從業員이라 함은 被雇傭者 뿐만 아니라 事業主(無給) 自身과 그의 家族으로서 從事하는 者(無給으로)까지 包含하게 되는데 申告者인 事業主는 往往히 自身과 그의 家族은 從業員數에 넣지 않는다. 이러한 漏落을 防止하기 爲하여는 規模에 關係없이 全事業體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 또 實際問題로서 從業員 3人이라는 零細 事業體는 事業主 自身이나 그의 家族에 依해 움직이기 마련이고 아무리 적어도 그러한 者의 數가 3人(本人과 그의 數 그리고 또하나의 家族이 되지 않는 事業體는 드물다. 그러므로 아예 1人 以上으로 하여 모조리 다 對象으로 하는 것이 깨끗하고 合理的이다.

셋째 每十年 모처럼 한번씩 實施하는 稀有調에서는 이왕 많은 經費, 人員, 時間, 努力이 드는 것이니 全事業體를 對象으로 함이 意義있을 것이다. 이 結果를 基準으로 하여 特別히 重要性을 띤 業種이나 特定 規模의 事業體或은 어떤 項目에 對하여는 經常調査로서의 標本調査를 通하여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今年 들어서 産業銀行과 中小企業銀行이 다 같이 標本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對象이 되는 事業體의 規模와 項目에 若干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둘 다 産業調査의 範疇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는 事實인 以上 國家的 查三 불 때는 人員과 經費의 二重으로 들고 있는 셈이 된다. 統計法에 依하여 이런 事實은 하루 速히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에서

第二章 項 目 論

本章에서는 蒐集하고자 하는 資料의 項目에 關하여 論하고
저 한다. 論述의 焦點은

첫째 政府나 民間, 其他에서 必要로 하는 資料는 어떤 것이
며 그것을 蒐集하려는 頻度を 어느 程度로 할 것인가
둘째 그러한 資料中 어떤것이 全數調査와 같은 大規模 調査
에서 蒐集할 것인가? 또 그 頻度は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第一節 事 業 體 數

第一章에서 이미 우리는 産業의 構造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
에 對해 強調한바 있는데 事業體의 業種別, 地域別, 規模別 其
他 特徵別, 分布는 産業構造를 記述하는데 基本이 되는 것이
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事業體의 諸業種에 關한 相對的 重
要度를 正確히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項目
別 分布도 必要한데 그것에 關하여는 第三章에서 論하기로 한
다. 아무튼 事業體數는 調査對象 即 調査集團을 規定짓는 것이
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먼저 이것에 關한 資料가 蒐集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蒐集되는 것인가? 事業體數도 嚴然히
하나의 調査項目인 以上 本章에서 論議되는 것이긴 하나 그것
은 다른 項目과는 달리 調査表上에 하나의 質問欄으로 設定되
는 것이 아니고 다만 調査表 그 自體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調査表 枚數가 곧 事業體數인 것이다. 왜냐 하면 調査表란
原來 그 一枚가 한事業體에 所要 되겠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前者의 枚數와 後者의 枚數는 언제나 一致하기 마련
이다.

栗

栗

栗

(3 2)

어느 나라에서나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勿論 아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한 調査表를 가지고 여러 事業體를 調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 여러 調査表를 가지고 한 事業體에 쓰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境遇엔 勿論 事業體數를 把握하기 爲하여 다른 方途를 講究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에 對한 說明은 略하기로 한다. 그것은 좀 複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라는 事實上 稀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例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第二節 雇傭, 人時 및 人件費

가. 資料의 必要性

(1) 雇傭도와 人件費

現代國家의 特徵은 福祉國家로서의 指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完全雇傭을 期하므로써 그들의 理想을 達成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産業의 振興은 國民의 就業과 所得의 水準을 올리는데 必要한 要素로서 그러한 理想의 現實化를 爲하여는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國은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하여 또 그렇게 하는데 所要되는 各種財貨의 生産을 爲하여 그들의 産業擴張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努力의 傾注에는 어떤 科學的인 土台가 뭐냐? 統計資料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아무리 全力을 傾注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砂上樓閣格이 되고 만다.

必要한 것은 統計資料다. 무엇에 關한 統計資料냐? 雇傭, 人時 및 人件費에 關한 것이다. 産業雇傭의 水準에 關한 (即雇傭과 人시에 關한) 統計資料는 完全雇傭 또는 勞動의 利用을 增加시키려는 計劃의 範圍를 測定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産業雇傭도와 生産額間에는 깊은 關聯이 있기 때문에 前者에 關한 統計는 産業生産의 趨勢를 指示하기도 한다. 한편 人件費에

關한 統計資料는 產業從事者의 所得을 測定하고 따라서 그들의 財貨와 서비스에 對한 需要를 指示한다. 結果的으로 이러한 統計資料는

첫째 財貨를 爲한 市場을 定하고

둘째 經濟全體로서의 產業活動의 變動趨勢를 追跡하는데 使用된다. 例컨데 人件費에 關한 統計資料는

첫째 國家所得과 그 分布를 推計하는데 그리고

둘째 國家總生産이 이루어지는 方途를 알아내는데 必要한 것이다.

雇傭, 人時 및 人件費에 關한 資料의 用途는 上述한 바와 같 거니와 이러한 資料는 稀有調査에서 뿐만 아니라 經常調査 (每 年 節 혹은 每季)에서도 蒐集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2). 從業員의 現況

完全雇傭을 求하려고 하려면 或은 計劃目標을 達成하려면 或은 產業 擴張計劃을 樹立하려면 먼저 產業에 從事하고 있는 從業員의 現況을 把握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얼마만큼 雇傭해 야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勞動生産力에 關한 測定 은 產業擴張에 따라 所要되는 新從業員數를 推計하는데 必要하 며 人件費支出增加率을 計算하여 그러한 擴張計劃이 經濟的으 로 自然可能的 것인가에 對하여 또 現在의 雇傭底調는 人件費 가 많이 들기 때문인가에 對한 結論을 내리게 하여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勞動生産力에 關한 資料는 產業의 機械化 乃至 合 理化 程度(範圍)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한다. 種別(年令別, 性別, 職業別) 從業員에 關한 資料는 勞動의 需要供給을 맞 추어 보는데 必要하다.

從業員의 現況이란 그렇게 자주 變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그것에 關한 資料를 자주 (經常調査를 通하여) 蒐集할 必要 는 없다. 그러한 項目을 자주 넣어서 調査員의 負擔을 過重하

(3 4)

게 하여 좋지 못한 結果를 얻는 것을 避해야 한다. 그러므로 本項目은 稀有調査에만 包含시키도록 함이 可하다. 從業員의 現況에 關한 統計는 좀 더 細分된 專門的 研究와 分析에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人時에 關한 資料는 적어도 每年 蒐集되어야 할 것이다.

(3) 社會的 經濟的 目的

從業員의 現況에 關한 統計資料의 用途는 上述한바와 같거나 와 그것의 必要性은 다른 面에서도 일어난다.

첫째 經濟的 福祉를 促進시키려는 努力

둘째 勞動法의 制定과 施行에 必要한 諸措置

셋째 賃金 및 俸給額에 關한 協商

經濟的 福祉의 測定에는 賃金 및 俸給額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고 勞動法의 立法 基礎資料로서는 從業員數와 種別 從業員의 收入에 關한 統計數字가 必要하다. 一般적으로 이러한 資料는 稀有調査에서 蒐集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勞動者가 賃金引上의 要求나 其他必要에 依한 所謂 團體交涉 或은 其他 努力을 爲하여는 賃金에 關한 統計資料는 자주 必要하게 되고 있다.

나. 雇 傭

(1) 總 雇 傭

雇傭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느끼고 있는 事實이다. 그래서 各國은 稀有調査나 年例調査에서 이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으며 유엔이나 其他 國際機關에서 그렇게 勸告하고 있다. 그러나 總雇傭을 測定하기 爲한 資料를 蒐集함에 있어 利用되는 項目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大陸式 或은 折衷式 調査에서는 한 期間동안 事業體의 作業에 從事한 모든 사람을 (事業主, 家族從業員, 內職從事者, 被雇傭者) 把握한다. 한편 英美式 調査를 實施하는 나라에서는 調査年間 동안 數個時點에서 總雇傭을 調査하거나 數個時點에서 調査된 것

의 平均을 求하여 그 資料를 利用한다. 이때는 모든 被雇傭者 (카나다, 印度, 美國) 或은 生産從業員만을 調查하거나 被雇傭者中에서 直接으로 生産에 參加하는 者만을 (알젠티, 英國, 瑞典等) 調查하기도 한다.

兩者間에 介在하는 이러한 差異는

첫째 總雇傭에 關한 統計數字의 用度

둘째 各國의 産業사이에 存在하는 性質上의 差異

셋째 이러한 資料의 蒐集에 '따르는 諸問題' 街

에 起因한다. 大陸式 및 折衡式 調查에서는 한期間 동안의 從事者數가 必要한데 그 理由는

첫째 그러한 調查를 實施하는 나라에서는 産業의 構造와 資源에 關한 資料蒐集을 強調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爲하여는 事業體에 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期間 동안에 對하여 調查하는 것으로 足하며

둘째 많은 小規模 事業體도 對象으로 하는데 그러한 小規模 事業體에는 一般的으로 直接作業하는 事業主와 家族從業員, 內職從事者가 相當히 많은 까닭에 數個時點에서 이들을 調查한다는 것은 어렵다.

英美式 調查에서는 調查年間 全體를 通하여 雇傭度를 測定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한 期間에 對한 數字만으로는 不可能한 것이다. 왜냐 하면 從業員數가 調查年間中에도 相當한 變化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英美式調查에서는 小規模 事業體는 除外하기 때문에 調查年間の 數個時點에 있어서의 調查가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調查를 하는 나라에서는 雇傭 및 資料蒐集에 있어서 全從業員을 調查하는 것이 아니라 被雇傭者에 限하여 調查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첫째 被雇傭者 以外の 從業員은 産業活動이 變動한다 하여 따라서 變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둘째 이러한 資料는 다른 從業員에 對하여 보다 被雇傭者에

對하여 調査하는 것이 훨씬 容易하기 때문이다.

또한 平均賃金이나 平均作業時間을 計算하기 爲하여 被雇傭者數에 對하여만 季別資料가 必要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季別資料를 生産從業員에 對하여 蒐集하는데 그理由는 産業活動과 平均計算에 있어서 가장 變動을 많이 주는 要素가 바로 이 生産從業員이기 때문이다.

稀有調査에서는 産業의 構造를, 年例調査에서는 産業의 水準을 測定하기 爲하여 總雇傭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첫째 한 期間동안의 從事者數(事業主, 雇傭主, 家族從事者, 內職從事者, 被雇傭者)에 關하여는 稀有調査에서

둘째 數個時點에 있어서의 被雇傭者數에 關하여서는 年例調査에서

各各 資料를 蒐集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쪽이고 둘중에서 하나만을 擇해야 한다면 前者를 擇하는 것이 좋다고 유엔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本資料의 蒐集은 後者에 對해서 보다 前者에 對해서 훨씬 容易하기 때문이다.

둘째 前者가 後者보다 훨씬더 重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者에 對한 資料도 相當히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可能하다면 後者에 對하여서도 調査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經常調査의 小規模 標本調査를 통해 實施하면 可能할 것이다.

(2) 從 事 者

産業雇傭의 構造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同時에 實際的 立場에서 計劃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各國에서는 한 期間동안의 從事者의 特徵에 關하여, 稀有調査에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이러한 資料를 蒐集함에 있어서 區分되는 細部內容은 各國에 따라서 相當히 差異가 있지만 大體的으로는 從業上의 地位制, 即 事業主, 家族從事者, 內職從事者, 被雇傭者, 性別, 年金別

및 機能別 從事者數의 公布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從事者의 國籍, 市民權, 民族, 不具狀態, 採用 經緯等과 같은 特徵에 關하여도 調査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資料는 産業調査에서 생긴다. 그러나 調査에서 蒐集하는 것이 더 適合할 것이다. 從事者를 從業上의 地位別로 區分함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함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大部分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렇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에서 內職從事者는 빼기로 하였다. 韓國銀行이나 産業銀行에서 이를 調査해 내고져 하였으나 滿足할만한 結果를 얻지 못한다고 斷定, 이를 削除한 것이다. 經濟企劃院에서도 이를 처음에는 包含시키려고 企圖하였으나 數次에 걸친 試驗調査를 通해 그것이 不可能함을 알게 되었다. 그 理由는

첫째 西歐式 概念이 包括하는 home woker(이것을 內職從事者라고 번역하였다)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存在하긴하나 完全히 같은 것이 아니다. 即 兩者間에는 性質上의 差異點이 있다.

둘째 그러한 差異點을 具體적으로 記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意味하는 韓國實情에 알맞는 內職從事者의 定職規定이 困難하다.

셋째 申告者가 理解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即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正確한 申告를 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다.

넷째 內職從事者란 事業體內에서 從事하는 者가 아님으로 調査員이 直接 訪問하는 他計主義 調査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들의 눈에 띄이지 않는 이상 申告者가 어떤 目的意識下에(例컨대 課稅評價에 好條件을 具備키 爲하여) 或은 全然 非政黨的으로 이를 알려두지 않는限 아무리 調査項目으로 들어둔다 해도 얻는 資料는 거의 없다.

다음으로 從業者의 年金別 資料에 對하여 生覺하여 보자. 그것은 勞動關係 法令制定에 매우 必要한 것이어서 이를 蒐集하는 나라가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必要하면서 同時에 蒐集하기가 매우 어려운 項目임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年令을 細分하지 않고 單純히 成人과 未成人으로만 區分, 調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年令에 關하여는 全然「노·타취」하고 있다. 그理由는

첫째 各事業體에서는 從業員의 年令에 對한 記錄을 갖고 있지 않다. 卽 그들의 出勤籍나 俸給 或은 賃金臺帳(이런 것 具備가 없는데가 태반이기도 한데)에는 從業員의 年令에 關하여는 記載된 것이 없다.

둘째 事業主나(或은 僱傭主) 其他 關係事務取扱者라 할지라도 從業員의 年令을 一一히 記憶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모르고 있다.

다음으로 從業員의 機能制 分類에 對하여 生覺해보자. 이것은 정말 나다에 따라서 千態萬別이다. 그 區分의 基準, 方法 그리고 範圍가 各各 自國의 實情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고 할까. 아무튼 區分各各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單純히 活動의 形態에 따라 또 어떤 나라에서는 僱傭의 分野制로 技術의 熟練度에 따라, 或은 俸給 乃至 賃金 支拂方法에 따라 區分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共通의 分類를 찾아 볼것 같으면 從業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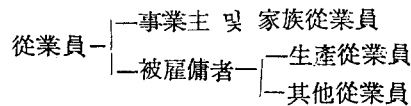
첫째 生産從業員

둘째 其他從業員

으로 나눈다. 生産從業員이라 함은 職工, 技師等과 같이 財貨 卽 製品 生産에 直接으로 從事하는 者를 말하고 其他從業員이라 함은 生産從業員이 아닌者 卽 行政要員, 事務員, 研究室 또는 實驗室 勤務者 等を 말한다. 이들 兩者間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으므로 유엔에서는 從業員의 機能制 分類로서는 이 分類

凡 2011

類法을 定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또 유엔에서는 이 分類法을 通用하는 것은 被雇傭者에게만 限定시킬것을 勸告하고 있다는 事實이 拮目할 만하다. 그 理由는 被雇傭者 아닌 다른 從業員 即 事業主는, 家族從業員(內職從業員)등을 이렇게 區別한다는 것은 實際적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勸告를 그대로 받아들여 被雇傭者에 對해서만 生産從業員과 其他從業員으로 區分하고 있다. 또 그남어지 從業員에 對하여는 事業主와 家族從業員을 따로 調査하지 않고 合쳐 버렸다. 從業員의 年수에 對하여는 調査하지 않지만 性別調査한다. 그것은 可能하니까……結局 우리나라서 現在 適用하고 있는 從業員의 區分을 圖示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다. 人 時

勞動의 生産力을 測定하기 爲하여 財貨와 서비스의 年間 生産量과 勞動의 年間 投入量을 比較해볼 수 있을 것이다. 調査 年間の 被雇傭者 또는 生産從業員數의 平均을 갖이고도 勞動投入量을 算出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勞動投入量의 正確한 測定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調査年間の 各時點에서의 生産從業員數란 주어진 平均値와 매우 큰 差異를 나타내게 되며

둘째 設令 平均値라는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人時 即 延作業間이 各各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時를 調査하는 것이 勞動投入量을 더욱 滿足스럽게 測定할 수 있을 것이다. 英美式 調査를 實施하는 나라에서는 大部分 이 人時를 調査하고 있다. 產出量 即 生産額은 生産從業員의 作業量과 가장 直接的인 關係를 갖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前記 諸國家는 모두 人時를 生産作業員에 限하여 調査하고 있다. 어떤 面에서 본다면 雇傭度에 對해서도 人時가 從業員數보다 더 좋은 尺度가 될 것이다. 例컨대 諸國은 언젠가의 年例調査에서 能히 生産從業員의 雇傭度를 測定하기 爲해 人時를 調査한적이 있다. 人時에 關한 資料는 또한 各個人別 作業時間數와 時間當 賃金을 計算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理由로 유엔에서는 各國이 生産從業員과 被雇傭者에 對하여 人時를 調査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調査項目에 넣지 못하고 있다 그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蒐集하기가 가장 어려운 項目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人時 即 延作業은 調査못하지만 人日 即 延作業日數는 調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調査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蒐集하고 난다음의 信憑性 問題로 그것도 結局 拋棄하고 말았다.

라. 人 件 費

調査年間に 支拂된 人件費에 對한 資料의 必要性도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를 蒐集하고 있다. 똑같은 理由로 유엔에서는 이의 蒐集을 各國에 勸告하고 있다. 유엔 勸告等에 依하면 이 資料는 每年 蒐集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다. 稀有調査에서도 勿論 이를 蒐集하되 細分하여 生産從業員과 其他從業員別로 調査하라고 勸하고 있다. 年例調査에서 이와같이 區分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한술 더 더 從業員의 性別, 年齡別, 其他 特徵別로 支拂된 人件費에 對해서도 調査하고 있다. 事業主 或은 同業者에게 支拂된 給與額까지 調査하는 나라도 있다. 人件費를

첫째 稀有調査에서는 한 期間동안 動員된 被雇傭者 全體를 여러가지 區分으로

둘째 年例調査에서는 機能別로

調査하면 여러가지 利點이 많다. 또 內職從事者에게 支拂된 賃金도 調査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內職從事者는 아예 調査項目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에 말할것도 없고 事業主나 同業者 或은 家族從事者에게 支拂된(어떤 形式으로 던) 給與額에 對하여는 調査하지 않는다 調査不能이기 때문이다. 다만 被雇傭者에게 限하여 調査하되 生産從事員으로 區分하기는 한다.

第三節 動力施設, 機械 및 其他施設

勞働 以外에 機械, 建物 및 垆地(即固定資産=資本)는 産業活動의 主要 資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産業容力を 測定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各國은 産業의 振興策과 擴張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첫째 生産容력

둘째 産業活動을 增加시키기 爲하여는 固定資産이 얼마나 더 所要되는가

셋째 所要擴張의 重要度

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다. 固定資産의 總計만으로 첫째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反面 마지막 두 要求에 對하여는 特定の 固定資産에 對한 資料를 求해야 한다. 産業의 稼動力을 測定하는데 使用되는 調査項目은 機械, 施設, 建物 및 垆地の 總額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單然얼마만큼 그 稼動力을 測定할 수 있는가 하는것은 疑心스럽다 왜냐하면

첫째 事業體에 固定資産의 役割에 差異가 있다.

둘째 그 總額이란 物價의 水準을 反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固定資産에 關한 正確하고 信憑性이있는 資料를 얻기가 極히 困難하다. 그러므로 이 固定資産에 對하여는 調査項目에서 除外한 나라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除外하지 않았다. 다른 項目에 比하여 이것은 比較的 蒐集하기 쉬운 것

(4 2)

이기 때문이다.

特定の機械나 施設의 物理的 容力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는 것은 固定資産의 總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는 만큼 複雜하지 않다. 特定の機械와 施設의 物理的 容力에 關한 資料는

첫째 그것이 明白하고 具體的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야하며 둘째 普遍的으로 理解될 수 있는 特徵을 記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項目의 內容은 動力施設(即 原動機, 電動機, 및 發電機)와 機械(即 織機와 施盤 等等) 및 其他 施設(또는 裝備 即 自動車, 起重機, 等等)이다. 産業擴張을 爲하여는 이런 것이 어느 程度로 必要한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關한 資料는 반드시 蒐集되어야 한다. 例를들면 動力施設의 物理的 容力에 關한 資料는

첫째 動力의 所要追加量

둘째 動力施設의 所要追加生産量 또는 購入量을 推計하는데 使用된다.

産業의 機械化와 合理化의 範圍에 關한 資料도 必要한데 그것에 對하여는 機械와 其他施設 또는 裝備와 그 容力에 關한 統計가 有用하다. 例컨데 機械의 使用은 機械化에 相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容力과 事業體數, 雇傭 또는 生産額과의 比較는 機械化의 程度를 나타내는 것이며 産業效率의 趨勢를 說明하는 것이다. 또 設置된 特定 機械의 容力은 産業活動이 技術의 變遷(發展)과 步調를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說明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 動力施設

動力施設이라 함은 電氣에너지 以外の 다른 어떤 에너지를 機械에너지로 變換시키는 原動機와 機械에 에너지를 電氣에너지로 變換시키는 發電機 및 電氣에 에너지를 機械에너지로 變換시키는

電動機의 세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産業活動의 主要資源이라 各國에서는 이에 關한 資料를 稀有調査에서 蒐集하고 있다. 그런데 動力施設에 關한 資料는 어느나라에서나 蒐集이 比較的容易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項目을 包含시키고 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 있다.

(1) 型態別 動力施設의 容力

原動機와 電動機는 서로 差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兩者를 따로 調査한다. 또 電氣(發電)會社를 除外하고는 發電機에 對하여 調査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電氣會社아닌 事業體에서는 電動機만을 쓰지 發電機를 쓰는데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原動機와 電動機에 對하여만이 調査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調査內容은 台數와 容力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事情이 다르다. 電氣業에 對해서는 産業調査의 範圍에서 처음부터 除外하였으니 發電會社의 發電機를 調査項目에 넣지 않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電力事情이 좋지 못하여 停電이甚한 結果 우리나라의 많은 事業體에서는 自家發電施設을 保有하고 있다. 이 問題는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그러한 發電機도 結局은 調査項目에서 빼기로 하였다. 그 理由는

첫째 그것은 他事業體에의 送電 또는 配電 卽 販賣하기 爲하여發電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自家消費를 爲해서 하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極히 不規則的으로(停電일때만) 必要할때만 發電하는 것임으로 記錄에 남겨 두는 것도 아닌데 어떤때는 많이하고 어떤때는 적게하기 때문에 發電量 把握不可能하다.

셋째 設令 그것을 把握했다 해도 그것이 産業活動의 水準을 表示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資料를 蒐集해 봤자 用途가 없다.

(4 4)

(2) 總容力 算出에 必要한 區分

動力施設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는 나라는 대개 動力施設自體 以外의 다른 機械를 運轉하는데 所要된 總力도 測定한다. 이것은 産業의 現況과 機械化의 程度를 把握하는 有用한 資料가 된다. 總容力을 計算하기 爲하여는

첫째 다른 機械를 運轉하는 原動機와 發電機에 連結된 原動機를 區別해야 하며

둘째 自家發電機에 依하여 發電된 電氣로 運轉되는 電動機와 購入된 電氣로 運轉되는 電動機를 區別해야 한다.

이러한 區別이 없어 冢이고는 總容力 算出에 重複이 생긴다. 왜냐하면 어떤 事業體에서는 發電機를 運轉하기 爲하여 原動機를 쓰는데 그 發電機는 다시 電動機를 運轉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重複되지 않게. 計算하려면

첫째 發電機 以外의 다른 機械를 運轉하는 原動機의 容력과 모든 電動機의 容력을 合치던지

둘째 購入된 電力으로서 運轉되는 電動機의 容력과 모든 原動機의 容력을 合치면 된다.

一般으로 以上 두가지 方法에 依하면 各各 다른 答이 나온다. 첫째 方法이 둘째 方法보다 낫기 때문에 各國에서는 前者를 擇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두가지 方法을 다 擇하고 있는데 必要에 따라 어느 쪽이나 便利한데로 또 存用한데로 計算하고 있다. 이러한 融通性을 갖기 爲하여 유엔에서도 兩者를 擇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3) 動力施設의 其他分類

前記 諸區分 以外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原動機와 電動機를 現在 使用中인 것과 運休中인 것으로 區分 調査한다. 이렇게 하는 理由는

첫째 어떤 事業體의 動力施設의 一部는 순전히 非常用에 不 過하며

使

둘째 動力의 保存量을 把握하기가 매우 困難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도 이렇게 區分하기를 勸告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區分을 避하고 있다. 動力施設이 運休하고 있다면 事業體 그 自體가 休業中인 것이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原動機를 다시 細分하여 型態別로 蒸氣機關, 蒸氣터빈, 水車, 內燃機關等으로 區分하고 있다. 調査員에게 負擔이 過重하게 하는 結果를 招來시키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러한 區分을 하라고 유엔에서는 勸告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調査員에게 負擔을 過重하게 한다고 보고 避하였다.

나. 機械 및 其他施設

動力施設 以外에도 여러가지 型態의 機械에 關한 資料는 特定한 産業活動의 合理化 程度를 測定하는데 利用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動力施設 以外の 機械에 關한 資料를 一般的으로 稀有調査에서 蒐集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 있다. 機械類에 關한 資料의 蒐集은 動力施設에 關한 資料蒐集等만큼 普通化되어 있지 않다. 그理由는

첫째 그것은 綜合的 産業指標가 아니며

둘째 그것은 後者보다 蒐集이 더욱 困難하기 때문이다.

有用한 資料를 얻기 爲하여 各國에서는 動力施設 以外の 機械類를 調査함에 있어서 物理的 容力の 測定이 普通的으로 可能的한 主要 機械와 運輸裝備에 限定시키고 있다. 例컨대 數個國家에서는 自動車의 積載定量을 調査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起重機의 크기와 型態를 調査하며 또 어떤 나라에서는 織機의 크기 型態, 材料등을 調査한다. 다같은 機械라 할지라도 容力を 測定함에 있어서 그것이 合理的이 되도록 하기 爲하여는 型態別로 差異가 나기 때문에 이와같이 區分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區別은 오히려 混亂을 갖어오고 調査員의 負擔을 過

重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區分을 避하였다.

第四節 投 資

가. 資料의 必製性

第一章 第六節 産業調査의 沿革에서 既述된 바와 같이 投資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을 오래前부터 많이 強調되어 왔다. 이러한 必要性이 생기는 原因은 갖가지이다.

첫째 富

둘째 生産能力

셋째 資本支出

을 測定하려는데 있다. 첫째와 둘째를 滿足시키기 爲하여는 固定資産額과 또 어느 範圍內에서는(流動資産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던 된다. 셋째의 必要性은 最近에 發生된 것인데 그것을 滿足시키기 爲하여 各國은

첫째 固定資産의 年間支出額

둘째 在産額의 年間變動

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1) 富와 財政構造의 測定

産業上의 富와 容力을 測定하기 爲하여 初期에는 事業體에 投資된 金額에 關하여 調査해 보려는데 努力을 集中시키고 있었다. 이 方法을 實際로 適用해 보니 本構造에 關한 資料로서는 富를 有形으로 信憑性있게 測定할 수 없다는 結論을 經驗에 依하여 얻게 되었다. 例컨대 新設事業體에 있어서는 發給된 株券의 總額이 받드시 獲得된 資産의 總額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豫備費(現金 또는 其他)或은 經常費 支出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資本計定과 有形의 富의 總額과의 一致하는 程度는 事業體가 오래될 수록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國은 有形資産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기 始作하였다. 유엔의 專門家들도 이것이 産業資本을 測定하는 最善의

方法이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富를 財政的 面에서 測定하는 前述方法이 廢棄된 지금에 와서도 그 方法을 擇하고 있는나라도 더러 있다. 그들은 産業活動上의 財政이 어떻게 調整되는 것이며 누가 事業體를 潰고 있는가에 關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方法이 取해지지 않고 바로 有形資產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2) 投資支出의 測定

投資支出이 産業活動의 水準에 많은 影響을 주기 때문에 그것의 資金調達 方法은 무엇이며 그것이 經濟에 차지하는 位置가 어떤 것인가를 確定하기 爲하여 우리의 注意의 焦點을 바로 그것에 두어야 하겠다는 認識이 近年에 와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各國은

첫째 總國民生産을 獲得하고 그 크기를 決定하며

둘째 通貨膨脹 或은 收縮에 미치는 影響

에 있어서의 投資支出의 役割을 興味있게 注視하게 되었다. 이러한 目的에 비추어 各國은

첫째 總國民生産과 그것에 所要되는 資源을 推計하고 豫測하기 爲하여,

둘째 貯蓄과 投資를 比較하기 爲하여

事業體의 投資支出에 關한 資料를 必要로 하고있다. 固定資產 即 機械建物貸地에 對한 年間 支出額과 流動資產 (即 生産材—原料半製品 및 完製品의 在庫額)에 있어서의 年間 投資額 間에는 그 效果上 差異가 있기 때문에 兩者에 對하여 따로 따로 資料를 蒐集해야 한다. 在庫額의 變化로서 알수 있는데 萬若 이 값이 줄어들면 「마이너스」投資가 일어난다. 工場의 補修나 擴張의 比率를 測定하기 爲하여 固定資產의 支出額에 關한 資料도 必要하다. 그리고 需要供給 및 價格問題에 關聯된 在庫品을 增加시키기 爲하여, 分散되어있는 여러가지 財貨를 適切히 分配하기 爲하여, 特定한 商品의 生産趨勢를 豫測하기 爲하여 在庫

(48)

額에 關한 資料도 必要하다. 이러한 必要性은 經濟活動의 水準에 關한 關心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으로 固定資產의 支出額과 在庫額에 關한 資料는 經常調查에서 蒐集토록 해야 할것이다.

나. 財政構造

많은 國家, 特히 後進國의 大部分은 産業에 投資된 金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한다. 또 이들은 株式會社에 對하여는 公稱資本金, 支拂資本金 等を 調查한다. 甚至於 어떤 나라에서는 投資者의 國籍과 其他特徵에 關하여서도 調查한다. 産業投資의 財政의 面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고 그것이 統計調查의 實際的目的에 符合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基本産業調查에서 蒐集해야 할것인가에 對하여는 적지않은 疑問이 있다. 財政上의 資料蒐集에 가장 適合한 調查單位는 企業體이다. 왜냐하면 投資額은 보통 全體로서 取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基本産業調查에서의 最適調查에서의 最適調查單位는 事業體인 것이다. 財政投資額을 複合單位企業體의 構成分子인 事業體에 分配시켜본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또 設令 分配가 可能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分配된 投資額의 統計數字가 企業體의 投資額에 미치는 影響이 없을 뿐더러 아무런 意義가 없다. 그러므로 유엔에서는 基本調查에서 投資의 財政面을 調查하지 말도록 勸告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財政構造에 關하여는 調查項目에 包含되어 있지 않다.

다. 有形固定資產의 總額

産業의 富와 容力を 測定하기 爲하여 各國에서는 事業體가 保有하고 有形固定(資本財貨)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되

첫째 機械 및 施設

둘째 建物, 構築物 및 垆地

로 나누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둘째를 다시 細分하여 建物

및 構築物과 垡地를 區別하고 있다. 固定資産의 總額이 産業能力에 關한 正確한 尺度가 될수있을까 하는데는 疑問의 餘地가 없지 않다. 또 有形固定資産에 關한 資料를 蒐集함에는 많은 時間이 所要되며 매우 어려운 問題일뿐만 아니라 結果가 좋지 못하여 不完全하고 信憑性없는 數字를 얻게되는 경우가 往往히 發生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에 關한 資料의 蒐集을 拋棄하였고 유엔에서도 이를 蒐集하라고 勸告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資料의 重要性에 비추어 蒐集하기로 決定하였던 것이다.

라. 有形固定資産의 支出額

有形固定資産의 年間支出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는 나라가 漸漸 많아지고 있다. 이 資料의 重要性에 비추어 유엔에서는 每年 이를 蒐集하라고 勸告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이 資料를 每番 蒐集하고 있다. 固定資産은 總額을 調査하는 基本調査稀有調査의 結果는 그러한 季例調査의 基準이 될것이다.

大部分의 國家는 年間支出額을

첫째 機械와 施設

둘째 建物과 其他構築物

셋째 垡地

로 나누어 調査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勸告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區別은 資産에 따라 經濟에 미치는 支出의

첫째 役割

둘째 効果

에 差異가 있는데 起因한다. 예를 들면 機械와 施設 및 建物에 對한 支出額은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을 要求하는 것으로 看做될 수 있지만 垡地에 對한 支出額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前

(5 0)

者는 經濟나 産業의 分野에 있어서 資本財貨에 對한 總附加額을 表示하는 것이지만 後者는 그렇지 못하다. 垡地에 對한 支出額과 마찬가지로 中古(在來)의 機械, 施設 또는 建物에 對한 支出額은 經濟上 資本財貨에 總附加額을 指示하는 것이 못된다. 그러나 垡地나 中古(在來)의 固定資産에 對한 支出額은 事業體의 固定資産이 附加된 것을 말하며 收入額은 減少를 意味한다. 資本財貨에 附加되는 支出額을 分離시키기 爲하여 各國은

첫째 新規의 機械와 施設

둘째 新規의 建物 및 構築物

에 對한 支出額을 調査한다. 特定の 産業에 對한 固定資産額의 變化를 測定하기 爲하여 數個國家에서는 中古(在來)의 建物과 垡地의 購入 및 賣却(取得 및 處分) 額을 調査한다. 이리하여 유엔에서는

첫째 新規 固定資産에 對한 支出額을 中古 固定資産에 對한 支出額을 分離하고

둘째 機械및施設, 建物 및 構築物垡地에 對한 取得額과 處分 額을 따로히 調査하라고

勸告하고 있다.

마. 在 庫 額

(1) 報 告 期 間

調査年度の 年初年末間의 原資材(例컨데 原料, 部屬品, 補助料, 燃料等) 半製品 및 完製品의 在庫額의 增加는 既述한바와 같이 同年度の 資本形成에 寄與하는 것이다. 反面에 그것의 減少는 負投資 純資本消耗(disinvestment)를 示顯한다. 그런데 在庫額을 調査年度の 數個時點에서 把握할 必要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二重目的을 滿足시키기 爲하여 大部分의 國家는 年初年末의 在庫額을 年例調査에서도 調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年初 或은 年末에만 調査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그들이 다만 在庫額 現況이나 産業의 富에 關한 資料만을 蒐集하고자 하는 것이다. 後에 再論하게 될 것이지만 在庫額에 關한 資料의 다른 主要用途는

첫째 總生産額을 計算하기 爲하여 製品의 出荷額과 둘째 生産費를 計算하기 爲하여 原資料의 購入額을 調整하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로 유엔에서는 年初, 年末의 在庫額을 調査할 것을 勸告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2) 型態別 在庫額

在庫額을 調査함에 있어 原資材, 半製品, 完製品으로 三分하는 나라도 있고 原資材(半製品 包含)와 完製品으로 二分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前者의 方法을 勸告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後者에 屬한다. 그 理由는 半製品에 對한 記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區別이 困難하기 때문에 實査時 많은 混亂을 惹起하게 된다는 것이다.

(3) 品種別 在庫額

在庫額을 型態別로 調査함은 前項에서 본바와 같거니와 다시 製品의 品種別로 調査한다. 이것은 特殊한 問題 即 財貨의 需要와 供給, 그리고 分配의 問題에 利用하기 爲함이다. 品種別이라 하여 모든 製品을 細分하는 것이 아니고 數個 重要 製品에 限하여 區別한다. 그렇지 않으면 調査員의 負擔이 過重될뿐만 아니라 細分된 資料의 蒐集이 不可能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主要 品種만 分類토록 하고 있다.

第五節 生産額과 生産費

가. 資料의 必要性

(1) 純 生産 額

産業生産(Industrial production)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에

對하여는 이미 第一章에서 言及하였다. 財貨와 서비스의 生産 (output) 額은 産業活動의 水準을 測定하는 直接의 方法이며 總國民生産에 寄與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生産에 關한 資料는 既存事業體의 完全 稼動과 新規 事業體의 擴張範圍를 決定하는데 利用된다. 卽 同資料는 完全 稼動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事業體와 事業을 擴張하고 있는 事業體의 現況을 밝히는 것이다. 生産額과 그것에 關聯된 生産費(production costs)에 關한 資料는

첫째 實質的 生産計劃(目標)을 樹立하고 그것에 必要한 資源의 動員計劃을 樹立하는데

둘째 그러한 計劃의 成就與否를 決定짓는데

셋째 特別한 注意를 要하는 業種을 分離해 내는데 도움이 된다.

(2) 總 生 產 額

前項에서 言及된 純生産額 以外에 總生産額에 關한 資料도 必要하다. 그것은

첫째 産業聯關(卽 投入量 및 產出量) 研究에 있어서와 같이 서로 다른 分野의 財貨와 서비스의 現況을 測定하고

둘째 特定の 財貨와 서비스의 需要, 供給을 比較하는데 緊要한 것이다. 總生産額에 關한 資料의 用途는

첫째 事業體의 擴張이나 縮少의 影響을 檢討하고

둘째 産業活動을 經濟全體의 成長速度와 步調를 같이 하게 하고

셋째 商品供給의 過剩 或은 過少 問題와 關係 物價問題를 取扱하고

넷째 貿易 및 關係政策 樹立에 있다. 그 밖에

첫째 物價調査

둘째 資本形成推計

셋째 生産量推計, 季別 或은 月別

등에도 이 資料가 利用된다. 民間 特히 實業家는 이 資料를

첫째 그들의 相對的 競爭位置

둘째 그들의 製品市場 및 增産可能性 與否

셋째 原料와 燃料의 供給源

을 決定하는데 利用한다.

(3) 生 産 費

原料, 燃料 및 受託製造費(賃加工料)는 産業生産額의 水準을 決定하는 要素들이다. 이들이 바로 生産費일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生産이란 있을수없다. 그러므로

첫째 生産費

둘째 特定の 原料, 燃料 및 電氣의 消費額 및 量

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다. 이중에서도 特別히 後者는

첫째 産業活動의 萎縮과 그 影響을 追跡하고

둘째 産業活動의 擴張計劃을 樹立하고

셋째 需要供給과 物價問題를 取扱

하는데 利用된다. 生産費에 關한 資料의 이와같은 必要性은 總 生産額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和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 用途도 마찬가지로 할수있다. 但生産費에 關한 資料는 한가지 더 用途가 있는데 그것은 純生産額을 計算하는데 利用된다는 것이다.

나. 總生産額

(1) 生産高

既述한바와 같이 總生産額을 調査하는 方法은

첫째 現金收入

둘째 財貨와 서비스의 總生産額

셋째 兩者

의 세가지가 있다. 兩者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 理由는

첫째 現金收入은 調査年間の 財貨와 서비스 販賣額을 測定하는

(5 4)

것인데 그중의 一部는 前年度에 生産된것도 있을 것이다.
둘째 調査年間 生産된것중 一部는 在庫로 남아있는것이 있을 수 있다.

셋째 申告者에 依하여 蒐集되는 生産高에 關한 資料는 生産額에 關한 것이고 販賣額은 除外되는수가 許多하다.
그런데 現金收入에 關한 資料는 大陸式(事業體)調査에서 蒐集되고 總生産額에 關한 資料는 英美式(生産)調査에서 蒐集되고 있음은 注目할일이다. 이러한 差異가 일어나는 理由는 아래와 같다.

첫째 大陸式調査에서는 小規模 事業體도 對象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總生産額보다 現金收入을 調査하는것이 容易하다. 英美式調査에서는 그러한 小規模 事業體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둘째 大陸式調査에서는 事業體의 相對的 重要度を 測定하는 資料가 必要한데 現金收入이 바로 이資料를 蒐集할수있는 調査項目인것이다. 그러나 英美式調査에서는 生産에 關한 資料蒐集에 重點을 두고있는 것이다.

유엔의 勸告案에 依하면 稀有調査에서는 生産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年例調査에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지만 現金收入(即 販賣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해도 無妨하다고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産業調査는 大陸式과 英美式을 折衡한것 이지만 亦是 大陸式에 가까운 것이다 販賣額에 對하여 調査하고 있다.

販賣額(出荷額)과 生産額에 對한 詳細한 것은 第五章에서 再論할것이지만 調査年間の 生産高는

첫째 直接法에 依하든지

둘째 間接法에 依하여

調査할수 있다. 前者는 生産額을 直接申告받은 것이고 後者는 調査年間の 販賣額(出荷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한 然後에 이것을 年初年末의 在庫額과 調整하여 間接的으로 生産額을 알아내

는 方法이다. 特히 小規模 事業體들 對象으로 하는 大陸式 調査에서는 間接法이 直接法보다 利點이 많다. 왜냐하면 그것에 依한 資料가 實數에 보다 가까운것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2) 品種別 生産高

直接法에 依하든 間接法에 依하든 品種別로 生産高를 調査하는 나라가 많은데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 있다. 實上 總生産高란 個個의 (品種別)製品의 生産高의 合和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있다.

다. 生 産 費

(1) 原料費 및 委託製造費

調査年間の 總生産額을 調査하는 나라는 同期間の 生産費에 關하여도 調査한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있다. 調査年間の 生産費를

첫째 原料, 部屬品, 容器, 補助機料

둘째 燃料

셋째 電氣

네째 委託製造

에 消費된 諸費用에對하여 申告者로부터 直接받으므로써 算出하는 나라가 많다. 어떤 나라에서는 原料費 및 燃料費를 計算하기 爲하여

첫째 調査年間の 購入額을 調査하고

둘째 이 數字를 年初年末의 在庫額과 調整한다.

유엔에서는 어느쪽을 特別히 指摘하지 않았지만 可及的後者의 方法을 擇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있다. 그 理由는 各 事業體에서는 生産에 消費된 原料와 燃料의 量과 額에 對한 記錄은 別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들의 購入量및 額에 關한 記錄을 하고있는 경우가 더 많은 까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後者의 方法을 擇하고 있다.

(2) 品種別 原料費

(5.6)

生産에 消費된 原料, 燃料, 電氣 등의 種別로 調査하는 나라가 많은데 (前項에서 言及된 方法의 어느쪽이든) 유엔에서도 그렇게 勸告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다.

라. 純生産 및 純所得

(1) 附加價值

生産額과 生産費를 調査하는 나라는 附加價値의 算出根據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前者에서 後者를 뺀 것이 附加價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大部分은 附加價値를 每年計算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附加價値는 每年計算하라고 勸告하고 있다.

그런데 附加價値란 것이 곧 GNP에 對한 事業體의 寄與額을 測定하는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한 事業體가 다른 事業體로부터 獲得한 서비스를 生産에 消費한 費用은 除去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例示해 보면 機械와 建物 및 地의 修理 및 維持費 廣告料, 保險料, 電話料, 交通費 등과 같은 經營上의 서비스料, 辯護士料 計理士料 등과 같은 專門的 서비스料, 郵便料와 같은 政府서비스料 등이다. 또한 附加價値는 事業體가 產出한 (generated) 國民所得을 測定하는 것도 못된다. 왜냐하면 生産에 利用된 固定資産의 減價償却額이 除外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純生産 및 純所得의 計算에 所要되는 補助資料

事業體의 GNP에 對한 寄與額을 計算하기 爲하여 生産에 消費된 모든 他事業體로부터의 서비스料도 調査하는 나라가 몇몇 있다. 그리고 事業體가 產出한 國民所得의 一部를 決定하기 爲하여 減價償却額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는 나라도 약간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附加價値만으로는 純生産과 純所得을 計算할 수 없어서 取하는 措置로서 비록 그 有用性은 認定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資料蒐集時에 惹起되는 困難性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러한 企圖를 勸告하지 않고 있다. 꼭 그것이 必要한 나라는 可

及의小規模의 標本調査에서 試圖할것이지 基本調査稀有調査全數調査)에서는 될수록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나라는 附加價値로서 滿足하고 있으며 純生産이나 純所得에 對하여는 計算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臨한다.

(3) 所得의 分類

事業體가 產出한 所得에 關한 資料以外에도 이 所得의 生産要素別分類에 關한 資料의 必要性도 漸增하고 있다. 生産要素란 人件費, 賃, 利子, 稅 및 利潤을 말한다. 被雇傭者에게 支拂된 人件費(및 內職從事者에게 支拂된 給與額)는 勿論 基本調査에서 蒐集되어야 한다. 그러나 事業主에 對해서는 이와같은 資料의 蒐集이 極히 困難하거나 事實上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支拂되는 것중에는 利潤밖에도 그들의 作業에 對한 賃金이나 俸給도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稅나 賃를 調査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利潤이란 것은 總生産額에서 他事業體에의 支拂總額, 減價償却額, 및 其他所得을 빼낸것을 말하므로 그것을 調査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유엔에서는 이것도 調査하지 않도록 勸誘하고 있으며 꼭 調査하고 싶으면 小規模 標本調査에서 하라고 勸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調査하지 않는다.

第六節 販賣額의 分類

前述한 諸項目 以外에도 販賣額을 顧客別로 調査하는 나라도 있다. 그 方法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外國商과 內國商別로

둘째 他事業體 代理店 都賣商 小賣商 消費者別로 한다.

첫째의 分類 方法은 貿易이나 關稅政策에 必要한 資料를 獲得하고저 하는 國家(政府)의 要求에 둘째는 市場(原料購入이나 製品販賣)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려는 實業家(事業主)의 要求에

(5 8)

依한 것이다. 어느쪽이나 그 有用性은 認定되지만 資料蒐集이 不可能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므로 유엔에서는 이것도 小規模 標本調査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試圖은 그만두도록 하라고 勸告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勸告를 따라 이것은 調査하지 않는다.